

제 58 회 경기도체육대회

참 가 요 강



2012

경기도체육회

목 차

■ 대회 개요(취지, 일반사항, 시상)	3
■ 참가요령	12
1. 경기 방법	12
2. 심판 및 경기규칙	12
3. 채점 방법	13
4. 순위결정방법	13
5. 직장운동경기부	14
6. 참가 자격	16
7. 참가 신청	18
8. 시·군 대표자 회의	19
9. 사전열람 및 이의신청	19
10. 기타 사항	20
■ 경기종목별 참가요강	21
1. 육 상	23
2. 수 영	26
3. 축 구	27
4. 테 니 스	28

5. 정 구	29
6. 배 구	30
7. 탁 구	31
8. 복 싱	32
9. 역 도	33
10. 씨 름	34
11. 유 도	35
12. 검 도	36
13. 궁 도	37
14. 배드민턴	38
15. 태 권 도	39
16. 볼 링	40
17. 골 프	41
18. 보디빌딩	42
19. 우 슈	43
20. 사 격	44
21. 요 트	45
■ 참가요강 변경사항	4
■ 경기운영 내규	51
■ 채점 내규	61

대 회 개 요

취 지

경기도체육대회는 모든 도민에게 스포츠를 보급하고, 스포츠 정신을 고취하여 도민의 우의와 체위를 향상시켜 향토 체육의 발전과 경기인구의 저변확대로 신인 선수를 발굴하며, 명랑하고 질서 있는 사회기풍을 조성함과 아울러 우리도 체육진흥에 이바지한다.

일반사항

1. 대회기간 : 2012. 5. 11(금) ~ 13(일) 3일간
2. 개최지 : 평택시
3. 주 최 : 경기도체육회
4. 주 관 : 평택시체육회
5. 후 원 :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6. 경기종목 : 21개 종목(정식종목 20개, 시범종목 1개)
※ 시범종목 : 요트

7. 경기종목 및 종별

[● 시범종목]

번호	구분 종목		일반부		고등부		비고
			남	여	남	여	
1	육	상	○	○	○	○	
2	수	영	○	○			
3	축	구	○	○			
4	테	니스	○	○			
5	정	구	○	○			
6	배	구	○	○			
7	탁	구	○	○			
8	복	싱	○				
9	역	도	○				
10	씨	름	○				
11	유	도	○				
12	검	도	○	○			
13	궁	도	○				
14	배	드민턴	○	○			
15	태	권도	○	○			
16	볼	링	○	○			
17	골	프	○				
18	보	디빌딩	○				
19	우	슈	○				
20	사	격(트랩)	○				
21	요	트	●	●			

시 상

1. 종합시상

- 1부 대항 : 종합성적 1, 2, 3위에 우승기 및 우승배 수여.
- 2부 대항 : 종합성적 1, 2, 3위에 우승기 및 우승배 수여.

2. 종목별 시상

- 종목별 1, 2, 3위에 우승배 및 상장수여.

3. 개인 및 단체 시상

- 개인 및 단체팀 1, 2, 3위에 상장 및 메달 수여.

4. 성취상 시상

- 전년도 종합성적 대비 현연도 종합 성적이 월등히 향상된 선수단 (1부·2부에 1, 2, 3위 성취상배 수여)

5. 모범선수단상

- 대회 및 경기장 질서에 가장 모범적인 선수단(1부, 2부)에 1, 2, 3위 모범상배 수여.

6. 입장상

- 개회식 입장 질서를 가장 잘 지킨 시·군선수단(1부, 2부)에 1, 2, 3위 입장상배 수여.

7. 경기단체 질서상

- 경기장 질서 및 대회운영을 잘한 경기단체에 질서상배 수여.

8. 최우수선수상(MVP)

- 개인 및 단체팀 선수 중 가장 우수한 선수를 도내 언론사 체육부 기자단에서 선정하여 수여.

9. 식전행사

《개 회 식》

가. 일 시 : 2012. 5. 11 (금) 11:00 예정

나. 장 소 : 평택 소사벌레포츠타운

다. 식 순

시 간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소요시간 (분)		
11:00	11:01	1	• 개 식 통 고	사 회 자
11:01	12:03	62	• 시·군선수단 입장	시·군선수단
12:03	12:06	3	• 국 민 의 례	시립합창단·국악단
12:06	12:07	1	• 개 회 선 언	경기도체육회 부회장
12:07	12:09	2	• 대회기 게양	(승리의 노래 합창)
12:09	12:14	5	• 성 화 점 화	성화 최종주자
12:14	12:17	3	• 환 영 사	평택시장
12:17	12:20	3	• 대 회 사	경기도지사
12:20	12:23	3	• 격 려 사	경기도의회 의장
12:23	12:26	3	• 축 사	경기도교육감
12:26	12:29	3	• 선수대표 선서	선수대표(남·여)
12:29	12:32	3	• 경기도의 노래	시립합창단·국악단
12:32	12:40	8	• 기수단 퇴장	시·군선수단

라. 시·군 선수단 입장순서

- | | | | |
|---------|---------|----------|----------|
| 1. 연천군 | 2. 수원시 | 3. 광주시 | 4. 성남시 |
| 5. 김포시 | 6. 고양시 | 7. 이천시 | 8. 용인시 |
| 9. 양주시 | 10. 부천시 | 11. 구리시 | 12. 안산시 |
| 13. 오산시 | 14. 안양시 | 15. 안성시 | 16. 남양주시 |
| 17. 포천시 | 18. 화성시 | 19. 의왕시 | 20. 의정부시 |
| 21. 하남시 | 22. 시흥시 | 23. 여주군 | 24. 파주시 |
| 25. 양평군 | 26. 광명시 | 27. 동두천시 | 28. 군포시 |
| 29. 과천시 | 30. 가평군 | 31. 평택시 | |

마. 입장 행진대형 편성요령

- 1) 입장대형 1개 제대로 편성
- 2) 인원 자율편성(50명 이내)
- 3) 기본모형(49명 편성기준)

- 임원단위대 17명(1+4열 × 4오)
- 여자단위대 16명(4열 × 4오)
- 남자단위대 16명(4열 × 4오)

- 4) 입장행렬 소품 제한

동력구동(차량 등), 대형구조물(2m×3m 이상), 대형풍선(지름 25cm 이상), 발사거리 30cm 이상의 폭죽, 소형 항공물류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류

※ 허용기준

밴드·고적대·풍물단중 택 1, 홍보현수막 및 기, 소형풍선(지름 25cm 이내), 인형(1인용), 색종이, 색테이프, 기타 2인 미만(1인)이 활용할 수 있는 용구

5) 입장식행사 시간 제한

본부석 앞 진행시 입장행렬 지·정체로 인해 입장식 행사일정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입장단위대 입장시간 : 각 시·군별 2분 이내

바. 개회식 입장요령

1) 경의 표시는 본부석 앞 제1표기선에서 부터 제2표기선까지로 한다.

(거리 20미터)

2) 단위대 지휘자는 제1표기선에서 제2표기선까지 자연스럽게 행진하면서 시·군별로 통일된 동작으로 경의를 표시하며 통과한다.

3) 태극기는 사열하지 않는다.

4) 체육회기는 제1표기선에서 깃봉을 45° 도 굽혀 사열한 후 제2표기선에서 원위치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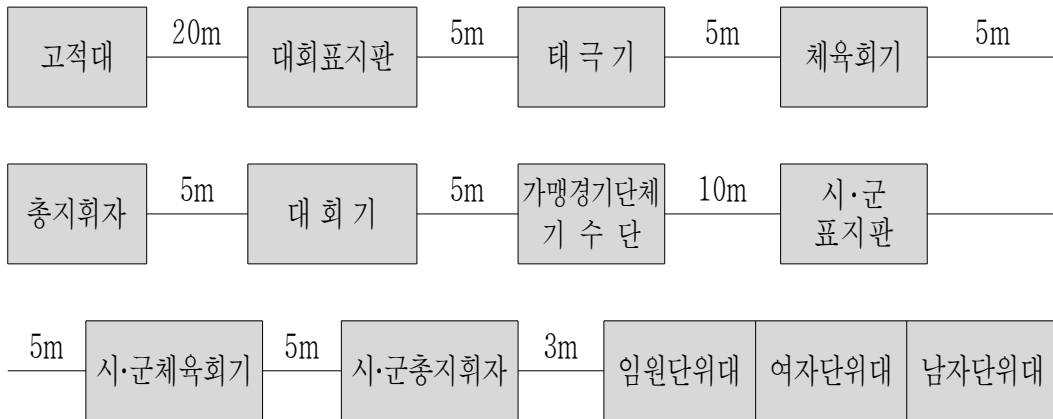
5) 대회기는 총지휘자가 제1표기선에서 경례를 하면 기를 위로 들어 올린 후 제2표기선에서 원위치로 한다.

6) 시·군 선수단 기수는 제1표기선에서 깃봉을 45°도 굽혀 사열한 후 제2표기선에서 원위치로 한다.

사. 시·군 선수단 복장

1) 시·군 선수단 복장은 시·군별로 통일한다.

아. 입장시 행진대행



자. 정렬시 요령

- 1) 선수단 정렬시 앞 사람과의 거리는 1미터를 유지하며 옆 사람과의 거리는 20센티미터를 유지한다.
- 2) 입장선수단의 거리는
 - (가) 표지판 수와 시·군 기수 → 5미터
 - (나) 시·군 기수와 총지휘자 → 5미터
 - (다) 총지휘자와 단위대 → 3미터
- 3) 가맹경기단체 기수단은 본부석을 통과하여 반대편 중앙선에서 4열이 2열로 변하면서 좌측과 우측으로 갈라져 표시된 선에 정렬한다.
- 4) 시·군 선수단은 본부석을 통과하여 반대편에서 정면으로 진입할 때 표지판수와 선수는 입장하되 기수는 정하여진 위치에서 멈춘다.

- 5) 시·군 선수단은 단위대별로 입장이 완료되면 지휘자가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 6) 시·군 선수단 입장이 완료되면 태극기와 체육회기는 본부석 밑으로 퇴장한다.
- 7) 표지판수, 시·군 체육회기 기수, 가맹경기단체 기수는 기봉의 하단을 지면에 대고 “쉬어” 자세를 취한다.
- 8) 대회기 기수는 대회기 게양대 앞에서 기폭을 팽팽하게 잡고 부동자세를 취한다.

차. 국기에 대한 경례

- 1) 내빈과 관중은 사회자의 구령에 따라 일어나 국기를 향한다.
- 2) 선수단은 총지휘자의 구령에 따라 뒤로 돌아서서 전원 거수경례 한다.
- 3) 기수는 국기를 향한 다음 기를 45°도 굽혀 경례한다.

카. 퇴장요령

- 1) 대회 표지판수는 정면으로 퇴장한다.
- 2) 시·군 선수단 및 기수단은 본부석 중앙선을 기점으로 좌측은 좌측문으로 우측은 우측문으로 퇴장한다.

타. 개회식 입장 단위대 집결요령 : 시·군 선수단은 개회식 당일 **09:30** 까지 **평택시 소사벌레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 집결하여 입장요령에 관하여 설명을 듣는다.

《폐 회 식》

가. 일 시 : 2012. 5. 13(일) 17:00 예정

나. 장 소 :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

다. 식 순

시 간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소요시간 (분)		
17:00	17:01	1	개 식 통 고	사 회 자
17:01	17:05	4	성 적 발 표	임 원 장
17:05	17:25	20	시 상	대 회 장
17:25	17:29	4	폐 회 사	대 회 장
17:29	17:32	3	대회기 전달	평택시장 → 대회장 → 연 천 군 수
17:32	17:35	3	환 송 사	평 택 시 장
17:35	17:36	1	폐 회 선 언	부 대 회 장
17:36			시·군 선수단 퇴 장	이별의 노래 합창

참 가 요 령

1. 경기방법

- 가. 각 종목별 1부·2부, 시·군대항전으로 한다.
- 나. 경기진행은 종목별로 5개시·군 이상이 참가 하여야 경기를 실시하며, 1부·2부 혼성경기는 실시하지 않는다.
- 다. 기록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로 진행하며, 단체경기 및 개인·단체경기종목은 시드제를 적용하며 시드(seed)는 개최지 시·군에만 배정한다.
- 라. 경기방법은 종목별 참가요령에 의하여 실시하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경기 종목의 경기규칙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다만, 경기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회본부의 결의에 따라 승부를 결정한다.
- 마. 1부·2부 구분기준 : 인구기준(2011년도 12월 31일 현재)
 - 1) 개최지가 속한 부는 15개 시·군
 - 2) 개최지가 속하지 않은 부 16개 시·군

2. 심판 및 경기규칙

- 가. 심판은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공인심판원이 담당한다.
- 나. 각종목별로 위원장 및 심판부원의 ID카드를 착용케 하여 경기운영의 신뢰성을 확립 한다.
- 다. 종목별 경기운영은 해당 경기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한다.
- 라. 종목별 경기단체에서는 우천시를 대비하여 차선책등 경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채점방법

- 가. 채점은 경기도체육대회 규정 중 채점내규에 의거 한다.
- 나. 기권·몰수·불출장한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0점으로 처리한다. 다만, 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의 경기 몰수는 당해 경기단체가 하되 채점 여부는 당해 경기단체의 사유서를 경기도체육대회 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 다. 경기부문의 종합득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frac{\text{1부·2부별 득점합계}}{\text{종별·체급별·세부종목별 득점합계}} \times \frac{\text{당해 1부·2부의}}{\text{종별·체급별}} \times 100 = \frac{\text{당해}}{\text{시·군의}} \text{ 종합득점}$$

획득점수

- 라. 종합채점은 1부와 2부를 구분하여 채점한다.
- 마. 우천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위자수에 해당하는 차위점수를 합산하여 동위자수로 등분하여 배점한다.
- 바. 본 대회에서 시범종별은 종합채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순위 결정방법

- 가. 1부·2부별 종합순위는 경기부문별로 획득한 점수의 총계로 한다.
- 나. 1부·2부별 종합득점이 동점인 경우
- 1) 1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이 상위
 - 2) 1위 경기부문수가 같을 경우, 2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이 상위
 - 3) 2위 경기부문수가 같을 경우, 3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이 상위
 - 4) 3위 경기부문수가 같을 경우, 경기자수가 많은 시·군이 상위

5. 직장운동경기부

가. 시·군(청, 체육회, 시설관리공단, 공사) 직장운동경기부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1) 기존 육성팀 선수와 신규 팀은 2012. 2. 29. 까지 영입 및 창단한 경우 참가할 수 있다.

※ 단, 전년도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당해년도 3월 29일까지 영입한 선수에 대해서도 참가자격이 허용되며, 도내 또는 타시·도 구분 없이 기본점수(20개 정식 종목 이외 종목)와 전국체전 메달획득 점수가 부여 됨 (※ 육성점수 배점표 참조).

2) 단일소속(직장운동경기부) 인원으로만 구성(단일팀)이 되었을 경우 참가할 수 있다.

(해당종목 : 축구, 테니스, 정구, 배구, 탁구, 검도, 궁도, 배드민턴, 볼링, 골프 등 10개 종목)

3) 직장운동경기부와 혼성(일반) 인원으로 구성(팀) 시 출전 할 수 있다.

(해당종목 : 육상, 수영, 복싱, 역도, 씨름, 유도, 태권도, 보디빌딩, 우슈, 사격 등 10개 종목)

4)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 학업을 위하여 야간 대학에 재학 중일 경우 직장팀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5)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후 전국체육대회를 타 시·도로 출전한 직장팀 선수는 참가 할 수 없다.

나. 시·군(청, 체육회, 시설관리공단, 공사)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점수 배점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1) 20개 정식종목을 육성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의 배점방법

(가) 지도자 및 선수 : 기본점수 배점 없음.

(나) 전국체전, 올림픽, 아시안게임 메달획득선수 가산점 배점
 (※ 육성점수 배점표 참조)

2) 20개 정식종목 이외 하계·동계종목을 육성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의 배점방법

(가) 지도자 및 선수 : 기본점수 배점.

(나) 전국체전, 올림픽, 아시안게임 메달획득선수 가산점 배점
 (※ 육성점수 배점표 참조)

※ 육성점수 배점표

구 분	육성 점수 배점					비고	
	기본 점수 (경기도체육대회 20개 정식종목 제외)	가산점 배점			비고		
		전국체전	올림픽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대비 %)					
개인	1위	80점	80점	240점(300%)	160점(200%)		
	2위		40점	80점(200%)	60점(150%)		
	3위		20점	20점(100%)	20점(100%)		
	4위이하		10점	-	-		
개인단체 및 단체종목	1위		80점	120점	360점(300%)	240점(200%)	
	2위			60점	120점(200%)	90점(150%)	
	3위			40점	40점(100%)	40점(100%)	
	4위이하			10점	-	-	

3) 육성점수는 상한선인 5,00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5,000점을 초과 시
 최고 시·군의 점수 비율로 육성점수를 배점하여 타 시·군에도 적용한다.
 ⇒ 육성점수 = 기본점수 + 가산점(전국체전 + 올림픽, 아시안게임)

예시) A시 육성점수가 6,000점일 경우

[6,000점 = 기본점수 + 가산점(전국체전 + 올림픽, 아시안게임)]

※ A 시는 육성점수가 상한선인 5,000점이 되며 아래의 비율계산법에
 의해 타 시·군은 총 획득한 육성점수의 83.3%만 적용된다.

☆ 비율계산법 : 5,000점(상한선) ÷ 6,000점(A시 육성점수) × 100% = 83.3%

다. 구비서류

- 1) 재직증명서 1부
- 2) 4대보험 등록확인증 1부
- 3)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기존 육성팀)
- 4) 중앙경기단체 선수등록부 1부(대진추첨 전일 까지)
- 5) 타 시·도 영입선수는 전년도 전국체전 참가신청서 1부
(경기실적증명서 포함)
- 6) 증빙서류는 원본 1부만 각각 분리하여 제출할 것.
(20개 정식육성종목 1부, 20개 이외 육성종목 1부)

6. 참가자격

가. 경기도민으로서 아마투어 선수에 한 함.

나. 금번 대회에 만 18세 미만인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다만, 18세 미만이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참가할 수 있다.

(18세 미만 기준 - 1994. 3. 1일 이후 출생자)

다. 고등학교 선수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 1) 육상종목 고등부 선수는 학교 소재지 시·군으로만 참가한다.
- 2) 경기체육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육상종목 선수는 출신중학교 소재지 시·군으로만 참가한다.
- 3)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는 일반부에 참가 할 수 없다.

라. 금번대회 일반부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종목별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등록기준지는 2009. 2. 28일 이전부터 해당 시·군에 둔 곳으로 참가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변경의 경우 2009. 2. 28일 이후부터 2011. 2. 28일 사이에 경기도내에서 등록기준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시·군 등록기준지로 참가할 수 있다.
- 2) 주소지는 2011. 2. 28일 이전부터 대회 참가일까지 주민등록이 해당 시·군에 둔 곳으로 참가할 수 있다.
- 3) 군인 및 일반대학생 선수와 중앙경기단체에 등록된(2012년) 현역 선수는 등록기준지 및 주소지 참가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다.
다만, 주소지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도내에서 졸업하였을 경우에 해당 시·군으로 참가할 수 있다.
- 3-1) 상무팀 소속 군인은 타 시·도 소속으로 전국체전에 출전한 경우 참가할 수 없다.
- 3-2) 경기도내 K3팀의 경우 대한축구협회에서 주최하는 K3 리그에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전년도까지 2년간 2회이상 출전실적이 있는 팀에 한하여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와 관계없이 단일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단, 출전선수는 당해연도 선수등록된 선수에 한함.)
- 4)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후 전국체육대회를 타 시·도로 출전한 실업(일반) 선수나, 타 시·도 소속으로 선수 등록된 실업(일반) 선수는 등록기준지와 주소지 시·군으로 참가할 수 없다.
- 5) 아래 신분증을 지참한 선수만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6) 2개 시·군 이상 참가자격이 있는 선수가 이중 신청되었을 경우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시·군으로 참가한다. 선수 1명의 출전동의서를 2개 시·군 이상이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 후 해당 선수의 출전자격을 박탈한다.
- 7) 금지약물 복용으로 국내·외 대회 출전 금지중인 선수는 참가 할 수 없고, 경기도 가맹경기단체 이상의 단체에서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기간 중에는 임원 및 선수로 참가 할 수 없다.
- 8) 동일인이 1개 경기 이외에 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예) 유도경기에 참가하는 선수가 씨름 등 타 종목에 참가할 경우

7. 참가신청

가. 신청마감 : 2012년 3월 30일(금) 14:00

나. 신청장소 :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부 운영과

다. 신청요령

- 1) 종목별 참가요령에 의함.
- 2) 참가신청서 주소란에 등록기준지 또는 현주소를 기재할 것.
(비고란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인지를 명확히 기재할 것)
- 3) 개인경기종목의 참가신청서 작성 시 세부종목별 참가표시를 (“○”)
참가신청서 마감이후에는 정정 또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서
작성 시 정확히 기재 요망.
(참가신청서는 본회 홈페이지를 참고(필히 다운받아)하여 작성 제출)

라. 방 법 : 시·군별 책임자가 직접 제출한다.

마. 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다.

1) 참가신청서

(가) 원본 1부(참가신청서에 구비서류 첨부)

(나) 사본 18부(참가신청서만)

2) 구비서류

(가) 고등부(육상)에 참가하는 선수

- 학교장 발행의 재학증명서 1통(사진첨부)

- 경기체육고등학교 재학생 : 중학교 졸업증명서 1통

(나) 군인, 일반대학생, 현역선수가 일반부에 참가하는 선수

- 등록기준지 참가자 : 기본증명서 1통

- 주소지 참가자 : 주민등록초본 및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각 1통

- K3참가팀 : 2010년, 2011년 대회 출전 실적(2회 이상) 및 2012년도
선수등록 현황 각 1부.

(다) 일반부에 참가하는 선수

- 등록기준지 참가자 : 기본증명서 1통

- 주소지 참가자 : 주민등록초본 1통

(라) 구비서류 보완은 필히 대진추첨 개시 전까지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마) 예비선수 명단도 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보완하여 제출

8. 시·군 대표자회의

가. 일 시 : 2012. 4. 19(목) 14:00(예정)

나. 장 소 : 경기도체육회 10층 대회의실

다. 토의안건

1) 대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경기장 질서 확립

2) 대진추첨 및 기타사항

9. 사전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2. 3. 30(금) ~ 4. 13(금) (15일간)

나. 장 소 :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부 운영과

다. 조 치 : 참가신청 마감 후 열람기간 동안 시·군 책임자는 타 시·군의 참가신청서를 사전 열람하여 이상이 있을 시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기간 동안 이의신청 하여야 하며 체육회는 이를 조사 처리 하되 열람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는 이의신청서 또는 소청서(참가자격에 대한)는 일체 처리하지 않음.

단,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가 확인 될 경우(게임몰수)

라. 열람확약서 제출

- 1) 일 시 : 2012. 4. 13(금) 15:00까지
- 2) 장 소 :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부 운영과

10. 기타사항

가. 참가신청 선수의 부상 발생 시 대회 개막 7일전(2012. 5. 4(금) 18:00)까지 국·공립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예비선수 명단 내에서만 선수 교체 가능.

※ 예비선수

- 단체종목(축구 등) : 5명 이내
- 기록종목(육상 등) : 5명 이내
- 체급종목(유도 등) : 체급당 1명 이내

나.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부상선수에 대한 처리는 경미한 경우에는 현지에 배치된 의료반이 처리하되 그 외의 부상선수에 대한 치료 및 처리는 해당 시·군에서 조치한다.
스포츠 상해보험은 시·군 선수단별 가입하여야 함.

경기종목별 참가요령

1. 육 상

1. 종별 및 경기종목

가. 트랙경기

종 목	고 등 부		일 반 부	
	남	여	남	여
100m	○	○	○	○
200m	○	○	○	○
400m	○	○	○	○
800m	×	×	○	○
1,500m	○	○	○	○
5,000m	○	○	○	○
400mR	○	○	○	○
1,600mR	○	○	○	○
계 : 8종목	7	7	8	8

나. 필드경기

종 목	고 등 부		일 반 부	
	남	여	남	여
높 이 뛰 기	○	○	○	○
멀 리 뛰 기	○	○	○	○
포 환 던 지 기	○	○	○	○
창 던 지 기	○	○	○	○
계 : 4종목	4	4	4	4

다. 마라톤 경기

종 목	고 등 부		일 반 부	
	남	여	남	여
단축마라톤(10km)	×	×	○	○
노장마라톤(5km)	×	×	○	×
계 : 2종목	-	-	2	1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가. 감독, 주무, 코치 외 각 시·군별 1인 2종목이내 1종목 2인 이내
- 나. 단축마라톤은 각 시·군별 5명 이내
- 다. 노장 단축마라톤은 각 시·군별 3명 이내

4. 경기방법

- 가. 트랙, 필드의 경기진행은 1부와 2부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 나. 마라톤의 경기진행은 1부, 2부를 구분치 않고 진행한다.
(1부, 2부를 구분해서 채점)
- 다. 노장마라톤 출전선수 참가자격
(1962년 만 50세부터 1947년 만 65세 사이의 출생자)
- 라. 시·군 단체전경기로 제한 시간 내 완주한 선수의 순위로 결정

※ 마라톤경기 제한시간

- 남자일반부 (10Km) - 45분
- 여자일반부 (10Km) - 55분
- 노장일반부 (5Km) - 23분

5. 채점방법

가. 트랙, 필드, 마라톤을 각 1개 경기부문으로 간주하여 분리 채점한다.

나. 트랙, 필드는 세부종목별 6위까지의 입선자만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선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

등 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배 점	6 점	5 점	4 점	3 점	2 점	1 점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다. 마라톤의 채점은 제한 시간 내에 골인한 선수 전원에 대하여 채점하되, 최하위자를 1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며, 제한 시간 내에 골인한 선수가 없는 시·군은 채점대상은 되나 0점이 되며, 최하위 시·군이 된다.

즉 0점의 시·군이 2개 시·군일 경우 최하위가 2개 시·군이므로 배점 3점부터 1점씩 가산배점 함.

2. 수 영

1. 종별 및 경기종목

종 목		일반부(대학생 포함)
		남·녀 공통
경 영	자 유 형	50m, 100m
	평 영	50m, 100m
	접 영	50m, 100m
	배 영	50m, 100m
	혼 계 영	200m
	계 영	200m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각 시·군별 1명 2종목 이내, 1종목 2명 이내

4. 경기방법 : 타임레이스로 실시한다.

5. 기 타 : 계영 및 혼계영에 참가하는 선수는 참가신청서에 별도 표시 없이 참가하는 선수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6. 채점방법 :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상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

3. 축 구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18명 이내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경기

나. 1회전부터 준결승까지 무승부 시 연장전 없이 승부차기로 한다.

다. 결승전 무승부 시 연장전 실시, 연장전도 무승부 시 승부차기로 한다.

5. 채점방법 : 채점내규에 의함.

예) 16개팀 참가 시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6 점	15 점	13.5 점	10.5 점	4.5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8 팀

4. 테 니 스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2명 이상 4명 이내

4. 경기방법 : 토너먼트식 단체전(2단식 1복식)
(단식, 단식, 복식 순서로 경기함)

5. 채점방법 : 채점내규에 의함.

예) 16개팀 참가 시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6 점	15 점	13.5 점	10.5 점	4.5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8 팀

5. 정 구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5명 이상 6명 이내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단체전

나. 국제식 3복식 2단식 3선승제

– 복식 : 7회 게임

– 단식 : 5회 게임

5. 채점방법 : 채점내규에 의함.

예) 15개팀 참가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5 점	14 점	12.5 점	9.5 점	4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7 팀

6. 배 구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가. 남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12명 이내

나. 여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12명 이내

4. 경기방법

가. 남자, 여자 - 6인제

나. 토너먼트식 경기(3판 2승제)

5. 채점방법 : 채점내규에 의함.

예) 15개팀 참가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5 점	14 점	12.5 점	9.5 점	4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7 팀

7. 탁 구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5명 이상 6명 이내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단체전(극동식 5단 2복 - 11점 5세트, 3세트 선승제)

나. 경기진행 시간이 20:00시가 경과할 경우 잔여경기는 익일 시행

5. 기 타 :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유니폼을 뒷면 중앙에 각자 성명(한자)을
다음 규격으로 필히 부착할 것.

규격 :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색상 : 바탕 흰색, 글자 검정색

(참고 : 부착하지 않은 선수는 출전을 금지함)

6. 채점방법 : 채점내규에 의함.

예) 16개팀 참가 시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6 점	15 점	13.5 점	10.5 점	4.5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8 팀

8. 복 싱

1. 종 별 : 남자일반부

2. 체 급

	체 급	중 량	비 고
1	라 이 트 플 라 이 급	49kg까지	
2	플 라 이 급	52kg까지	
3	밴 텀 급	56kg까지	
4	라 이 트 급	60kg까지	
5	라 이 트 웰 터 급	64kg까지	
6	웰 터 급	69kg까지	
7	미 들 급	75kg까지	
8	라 이 트 헤 비 급	81 kg까지	
9	헤 비 급	91 kg까지	
10	슈 퍼 헤 비 급	+91kg이상	

3. 참가자격

가.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나. 만 34세 연령제한 참가(기준 : 1978년 2월 28일 이후 출생자)

다. 경기도복싱연맹에 등록된 선수(선수증 소지자)

4.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각 체급 1명

5. 경기방법 :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한다.

6. 채점방법 : 채점내규에 의함.

예) 10명 참가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0 점	9 점	7.5 점	4.5 점	1.5 점
팀 수	1 명	1 명	2 명	4 명	2 명

9. 역 도

1. 종 별 : 남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체 급

	체 급	체 중	비 고
1	56 kg 급	56 kg 까지	
2	62 kg 급	62 kg 까지	
3	69 kg 급	69 kg 까지	
4	77 kg 급	77 kg 까지	
5	85 kg 급	85 kg 까지	
6	94 kg 급	94 kg 까지	
7	105 kg 급	105 kg 까지	
8	+ 105 kg 급	105 kg 초과	

4.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총 8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각 체급 2명까지 신청하여 경기를 할 수 있다.
5. 경기방법 : 인상, 용상 및 합계(인상+용상) 종목별 경기로 하여 각각 시상 및 채점한다.
6. 채점방법 : 체급별 참가자 중 1위를 8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계는 8위까지 채점 하되, 9명이상 출전할 경우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한다. 인상, 용상 경기의 채점은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으로 채점한다.
(단, 2명이 참가한 시.군은 인상,용상,합계에서 전원 채점한다.)

예) 8명 참가

등 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합계배점	8 점	7 점	6 점	5 점	4 점	3 점	2 점	1 점
인상, 용상배점	3 점	2 점	1 점					

10. 씨름

1. 종 별 : 남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체급 및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체급별 정선수 1명

체 급	체 중	인 원
경 장 급	-75kg	각 체급별 1명
소 장 급	-80kg	
청 장 급	-85kg	
용 장 급	-90kg	
용 사 급	-95kg	
역 사 급	-105kg	
장 사 급	+105kg	

4. 경기방법
 - 가. 토너먼트식 체급별 개인전
 - 나. 무승부일 경우 주의, 경고가 없을 시는 양 선수 중 체중이 가벼운 선수를 승자로 하며, 체중이 같을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5. 기타사항 : 모든 선수는 자기 체급 이상에는 참가할 수 있으나, 자기 체급 이하 체급에는 참가할 수 없다.
6. 채점방법 : 채점내규에 의함.

예) 12명 참가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2 점	11 점	9.5 점	5.5 점	2.5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4 팀

11. 유 도

1. 종 별 : 남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체급별 정선수 1명
4. 체 급

체 급	체 중	인 원
엑스트라 라이트급	-60kg급	각 체급별 1명
하 프 라 이 트 급	-66kg급	
라 이 트 급	-73kg급	
하 프 미 들 급	-81kg급	
미 들 급	-90kg급	
하 프 헤 비 급	-100kg급	
헤 비 급	+100kg급	

5. 경기방법

- 가. 토너먼트식 체급별 개인전
- 나. 모든 선수는 자기 신청체급에 한하여 경기를 할 수 있다.
- 다. 경기시간은 5분 단위로 한다.
- 라.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유도복 앞면 왼쪽에는 소속을 뒷면 중앙에는 성명을 필히 부착할 것 (도복은 청색, 백색 두 가지를 준비하되 대한유도회가 공인하는 유도복을 착용하여야 함).

6. 채점방법 : 채점내규에 의함.

예) 10명 참가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0 점	9 점	7.5 점	4.5 점	1.5 점
팀 수	1 명	1 명	2 명	4 명	2 명

12. 검 도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가. 남자일반부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7명 이상 9명 이내

나. 여자일반부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5명 이상 7명 이내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단체전

나. 선수 순위는 매 경기마다 변경이 가능하며, 해당경기 개시 20분 전까지 팀 감독 및 코치가 작성하여 경기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경기시간 : 남자부(5분), 여자부(4분)

라. 무승부일 경우 대표전을 하되, 제한시간 없이 단판승부로 한다.

5. 채점방법 : 채점 내규에 의함.

예) 9개팀 참가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9 점	8 점	6.5 점	3.5 점	1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2 팀

13. 궁 도

1. 종 별 : 일반부

2. 참가자격

가.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나. 대한궁도협회에 등록된 선수로서 회원증을 소지한 자

다. 남·여 혼성 참가 가능

3. 참가인원

가.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7명 이내(후보 2명 포함)

나. 각궁 및 개량궁 모두 참가 가능하나 개량궁 참가의 경우 2명 이내로 한다.

4. 경기방법

가. 1부와 2부를 구분하여 경기를 실시한다.

나. 단체경기로 하되 7명이 참가하여 상위 5명의 성적합계로 순위를 정하되, 각궁 및 개량궁 우선순위 없이 엔트리 5명을 결정하며 동점일 경우 비교전을 갖는다.

다. 시·군별로 1명씩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되 1명이 5순(1순 5발)을 발사한다.

라. 개인전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단체전에 참가한 전 선수의 기록에 따라 1, 2, 3위를 정한다.

5. 채점방법

가. 단체전 기록이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며 개인순위 3위 까지 배점한다.(1위:3점, 2위:2점, 3위:1점)

나. 1부와 2부를 구분해서 채점한다.

14. 배 드 민 턴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4명이상 6명 이내

4. 경기방법

가. 토너먼트식 단체전(전종별 : 2단식, 2복식, 1단식 - 3선승제)

나. 모든 경기는 3게임 21점 랠리포인트제로 실시한다.

다. 경기진행 시간이 20:00시가 경과할 경우 잔여경기는 익일 시행

5. 채점방법 : 채점내규에 의함.

예) 15개팀 참가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5 점	14 점	12.5 점	9.5 점	4 점
팀 수	1 팀	1 팀	2 팀	4 팀	7 팀

15. 태 권 도

1. 종 별

- 가. 남자일반부
- 나. 여자일반부

2. 체 급

구분	남 자 부		여 자 부		비고
1	-54kg급	- 54kg까지	-46kg급	- 46kg까지	
2	-58kg급	54초과 58까지	-49kg급	46초과 49까지	
3	-63kg급	58초과 63까지	-53kg급	49초과 53까지	
4	-68kg급	63초과 68까지	-57kg급	53초과 57까지	
5	-74kg급	68초과 74까지	-62kg급	57초과 62까지	
6	-80kg급	74초과 80까지	-67kg급	62초과 67까지	
7	-87kg급	80초과 87까지	-73kg급	67초과 73까지	
8	+87kg급	87kg초과	+73kg급	73kg초과	

3. 참가자격

- 가. 협회에서 인정한 유단자
- 나.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4. 참가인원 : 각 체급별 선수 1명

5. 경기방법 : 토너먼트식 개인전

6. 경기시간 : 부별 경기는 2분 3회전(중간휴식 1분). 단, 동점으로 3회전 종료시 1분간 휴식 후, 씨든테스 오버타임 회전(2분 1회전의 제4회전)을 실시.

7. 채점방법 : 채점내규에 의함.

예) 10명 참가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0 점	9 점	7.5 점	4.5 점	1.5 점
팀 수	1 명	1 명	2 명	4 명	2 명

16. 볼 링

1. 종 별

가. 남자일반부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5명이상 6명 이내

4. 경기방법

가. 단체전 5인조 4게임으로 실시한다.

나. 1부·2부를 구분해서 경기를 한다.

5. 채점방법

가. 단체전의 최하위 1부·2부를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 한다.

나. 1부·2부를 구분해서 채점 한다.

17. 골 프

1. 종 별 : 남자일반부

2. 참가자격

가.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나. 프로페셔널 참가자 제외(프로선수, 골프교습 등 대가 및 보수를 받고 있는 자)

※ 대한골프협회 아마추어 자격규칙 제1조

3.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4명

4. 경기방법 : 1부·2부를 구분하여 경기를 실시한다.

가. 1개팀 구성은 4명으로 하고, 3명의 최저 스코어를 합산한다.

나. 스트로크 플레이어 의해 순위를 결정한다.

다. 개인전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단체전 경기 선수 중 기록순위에 따라 1, 2, 3위를 결정한다.

라. 참가선수가 3명 미만일 경우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마. 경기용 사용구는 영국 R&A와 미국 골프협회에서 승인된 국제 공인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5. 채점방법

가. 단체전 기록이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고 개인전은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으로 전원 채점한다.

나. 1부와 2부를 구분해서 채점한다.

18. 보 디 빌 딩

1. 종 별 : 남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체 급

체 급		일 반 부	비 고
1	플 라 이 급	60kg까지	
2	밴 텀 급	65kg까지	
3	라 이 트 급	70kg까지	
4	월 터 급	75kg까지	
5	라 이 트 미 들 급	80kg까지	
6	미 들 급	85kg까지	
7	라 이 트 헤 비 급	90kg까지	
8	헤 비 급	90kg이상	

4. 참가인원 : 감독, 코치, 주무 외 선수 총 8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각 체급 3명까지 참가할 수 있다.

5. 경기방법

- 가. 경기는 세계보디빌딩연맹과 대한보디빌딩협회 경기규칙에 의해 실시함.
- 나. 월체는 한 체급만 인정(상체는 인정되나 하체는 불가)
- 다. 자유포즈 음악은 공동 음악으로 한다.
- 라. 계측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6. 채점방법

- 가. 1부와 2부를 구분하여 채점한다.
- 나. 체급별 8위까지의 입상자만 채점하되 1개 시·군 3명 이상이 8위이내 입상한 경우 전원 채점한다.

등 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배 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19. 우 슈

1. 종 별 : 남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3. 참가종목
 - 가. 투로 : 장권전능, 남권전능, 태극권전능
 - 나. 산수 : 5체급(-56kg, -60kg, -65kg, -70kg, -75kg)
4. 참가인원
 - 가. 투로 : 장권전능, 남권전능, 태극권전능
 - 1) 감독, 주무, 코치의 시·군별 4명 이내
 - 2) 세부종목별 1명이 참가하며 한 세부종목에 한하여 2명이 참가할 수 있음.
 - 나. 산수 : 코치의 체급별 1명
5. 경기방법 : 대한우슈협회 경기규칙에 따른다.
6. 채점방법 : 투로(장권전능, 태극권전능, 남권전능)와 산수경기에 배점된 점수를 합산하여 채점 한다.
 - 가. 투로(장권전능, 남권전능, 태극권전능) 종목의 채점은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상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하며, 차하위 시·군의 선수가 해당 순위를 승계토록 하여 채점 한다.
 - 나. 산수종목의 채점은 채점내규에 의해 배점한다.

예) 10명 참가 시

등 위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배 점	10 점	9 점	7.5 점	4.5 점	1.5 점
팀 수	1 명	1 명	2 명	4 명	2 명

20. 사 격

1. 종 별 : 일 반 부

2. 참가자격

가.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나. 남·녀 혼성도 참가 가능

3. 참가종목 : 트랩(개인·단체)

※ 개인전은 별도 실시하지 않음.

4.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의 선수 4명

5. 경기방법 : 대한사격연맹 경기규칙에 따른다.

6. 채점방법

가. 단체전 기록이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고 개인전은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으로 전원 채점한다.

나. 1부와 2부를 구분해서 채점한다.

21. 요 트

1. 종 별

- 가. 남자일반부
- 나. 여자일반부

2. 참가자격 : 참가요령 5항, 6항에 의함.

- 가. 만 18세이상
- 나. 요트경험자 및 요트 세일링이 가능하면서 경기를 참가할 수 있는 모든 남·녀

3. 참가종목

- 가. 레이저피코급
- 나. 레이저급
- 다. 윈드서핑

4.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3명

5. 경기방법 : 대한요트협회 경기규칙에 따른다.

6. 채점방법 : 시범종목은 채점제외

참가요강 변경사항

경기도체육대회 참가요강 변경사항

구분	종목	현행	개선사항	비고
참가 요령	공통	중앙경기단체 선수등록부 (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중앙경기단체 선수등록부 1부 (대진추첨 전일까지)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창단 당해연도 1월 31일	직장운동경기부 신규창단 당해연도 2월28일 까지	
		1월~3월 봉급명세서 1부 (지출결의서 포함)	4대보험 등록확인증 1부 변경	
제출 서류	공통	참가선수만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예비선수 명단도 참가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예비선수내에서만 부상선수 교체 가능 함 - 단체종목(축구 등) : 5명 이내 - 기록종목(육상 등) : 5명 이내 - 체급종목(유도 등) : 체급당 1명	
	육상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종목 모두 동일한 양식 사용	전국단위 육상대회 참가신청서 양식 사용
참가 자격	공통	참가자격7항 금지약물 복용으로 국 내·외 대회 출전 금지 중인 선수는 참가 할 수 없다.	참가자격 7항 금지약물 복용으로 국내·외 대 회 출전 금지중인 선수는 참가 할 수 없고, 경기도 가맹경기단 체 이상의 단체에서 출전정지 1 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징 계기간 중에는 임원 및 선수로 참가 할 수 없다.	
	축구	중앙경기단체 등록된 현역 선수(K3)는 주소지 및 등 록기준지 자격으로 참가	경기도내 K3 등록팀은 단일팀 으로 출전 ※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K3 리그에서 2년간 2회이상 출전실 적이 있는 팀에 한하여 참가	
	육상	경기도청 육상팀 미출전	경기도청 육상팀 출전 ※ 경기도내 중·고등학교를 졸 업한 선수만 가능하며, 출전 시 경기도체육회로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에 따른 파견 및 시간할애 요청을 접수 한 후 대회에 참가	
경기 방법	공통	종목별 5개 시군이상 참 가해야 경기 실시	2014년 대회부터 종목별 10개 시군이상 참가해야 경기 실시	

구분	종목	현행	개선사항	비고
채점 방법	역도	역도체급별 참가 자중 1위를 8점으로 하여, 합계는 8위까지 채점하고 인상, 용상경기의 채점은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으로 채점	체급별 참가자중 1위를 8점으로 하여 합계는 8위까지 채점하되, 9명 이상 출전할 경우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한다. 인상·용상경기의 채점은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으로 한다. (단, 2명이 참가한 시군은 인상·용상·합계에서 전원 채점 한다.	
경기 운영	검도	검도 여일 시범종목 운영	검도 여일 정식종목 운영	
	농구	농구종목 없음	2014년 대회부터 시범종목 운영 ※ 각 부별 10개 시·군이상 참가 시 개최 가능	
	레슬링	레슬링종목 없음	2014년 대회부터 시범종목 운영 ※ 각 부별 10개 시·군이상 참가 시 개최 가능	
	육상	육상 노장마라톤 5km	2013년 대회부터 - 명칭변경 노장마라톤 → 5km·10km - 연령대 변경 현행(만 50세~만 65세) → 변경(만 45세~만 55세)	
기 타	공통	최우수 선수상 없음	도내언론사 체육부 기자단 최우수 선수상(MVP) 신설	
	육상	유니폼(시군명칭 미기재)	시군명칭 기재된 유니폼 착용	
	공통	우승배 경기도체육회에서 일괄 제작	우승배 개최지역의 특성에 맞는 트로피 제작 ※ 트로피 시안 : 개최지와 협의 트로피 제작 : 경기도체육회	

<참고>

경기도체육대회 종목별 참가요강 변경(문구 수정) 내용

구 분	종목	현 행	개선사항	변경사유
종목별 참가요령	골프	4항 경기방법 가. 1개팀 구성 은 4명으로 하 고, 매일 3명의 최저 스코어를 합산한다. 마항. 경기용 사 용구는 영국 R and A와 미국골 프협회.	4. 경기방법 가항. 1개팀 구성 은 4명으로 하고, 3명의 최저 스코 어를 합산한다. 마항. 경기용 사 용구는 영국 R&A와 미국골프 협회.	가항. 경기가 1일 경기로 매일이라는 용어삭제. 마항. 공식단어 사용
	볼링	3항 참가인원: 감독, 주무, 코치의 선수 6명 이내	3항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5명이상 6명이내	대회를 참가하는 선 수의 최소인원을 명 문화 함.
	역도	4항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각 체급2명 (각시·군 에서 는 총 8명 이내 에서 1체급에 2 명까지 신청하여 경기를 할 수 있 다.)	4항가 인원 : 감 독, 주무, 코치의 선수 총 8명을 초과 하지 아니 하는 범위내에 각 체급 2명까지 참가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문구수정

경 기 운 영 내 규

경 기 운 영 내 규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내규는 경기도체육대회규정 등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를 조직적이고 체계 있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경기운영

제2조 (경기진행) ① 경기도체육대회(이하 “도민체전”이라 한다)의 모든 경기는 당해 경기단체 책임하에 이를 진행한다.

② 대회본부는 대회기간 중 해당경기 단체가 경기운영을 잘못하여 이에 대한 다툼이 있거나 경기 참가자들이 경기장 질서를 크게 문란시켜 더 이상 경기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회 운영위원의 결의로 해당경기의 모든 경기일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종목은 당해 연도 도민체전에서 실시하지 않은 종목으로 간주하여 종합득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조 (경기규칙) 도민체전의 경기는 당해 경기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하되 제3장과 같이 운영한다.

제4조 (경기일정) 도민체전의 종목별 경기일정은 해당 경기단체가 작성하며 본회가 이를 결정한다.

제3장 경기방법

제5조 (경기방법) 도민체전의 경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기록경기

- 가. 개인기록 경기 : 육상·수영(경영)·역도
- 나. 개인점수 경기 : 보디빌딩
- 다. 단체 및 개인점수 경기 : 볼링·골프·사격
- 라. 단체 및 개인기록 : 궁도

2. 토너먼트 경기

- 가. 단체경기 : 축구·배구
- 나. 개인경기 단체전 : 테니스·정구·탁구·검도·배드민턴
- 다. 개인체급 경기 : 복싱·씨름·유도·태권도·우슈

제6조 (단체경기 시드배정) 단체경기(개인경기 단체전 포함한다)는 시드제를 적용하며 개최지팀에 배정하되 별지 1의 위치에 배정한다.

제7조 (개인경기 시드배정) 토너먼트경기로 진행되는 개인경기는 대회개최지 선수에만 시드를 배정하며 시드는 단체경기 종목과 같이 1의 시드 위치에 배정한다.

제8조 (대진추첨) 토너먼트 경기의 대진은 시드를 배정한 후 시·군지부 대표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9조 (경기진행순서) 토너먼트 경기의 경기진행 순서는 별지 대진표의 순서에 따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승패결정) 토너먼트 경기에 있어서 동위자 순위전(3·4위전, 5·6위전)을 하지 아니한다. 무승부일 경우 참가요강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당해 경기 종목별 경기규칙에 의거하여 승패를 결정한다.

제4장 경기기록 관리

제11조 (경기기록 보고) 도민체전의 모든 경기기록은 가맹단체별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당해 경기단체의 경기부장과 기록책임자가 확인·서명하고 대회본부에 신속·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하고 기록관리는 가맹경기단체별로 한다.

제5장 심판 및 소청

제12조 (심 판) 도민체전의 경기심판은 경기단체의 심판규정에 의하되 그 경기단체가 지정한 심판원이 담당한다.

제13조 (소 청) 도민체전규정의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심판부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민체전 운영 위원회가 처리한다.

소청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도민체전 운영위원회 개최시에는 시·군 지부 임원 2인(시·군 관계공무원 1, 종목별 팀감독 1)과 당해 경기단체 심판장만이 참석한다.

제14조 (소청판결) 도민체전운영위원회의 판결은 최후 판결이며, 판결에 대한 이의는 제출할 수 없다.

부 칙

본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토너먼트 경기순서 및 시드배정】

▶ 범례 : 1은 시드번호, A, B, C...는 추첨 표시

[범 례]

○ 시 드 : 1

○ 추 첨 번 호 : A, B,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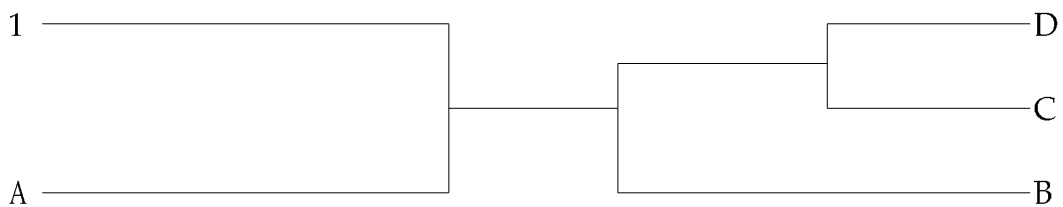
(3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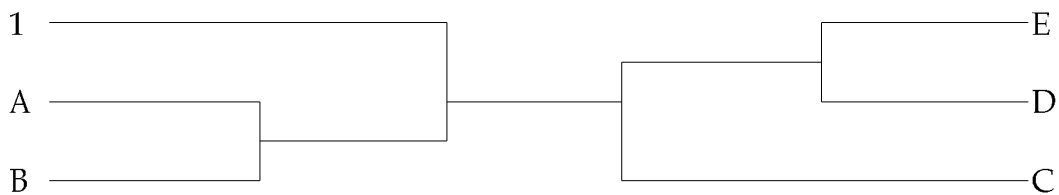
(4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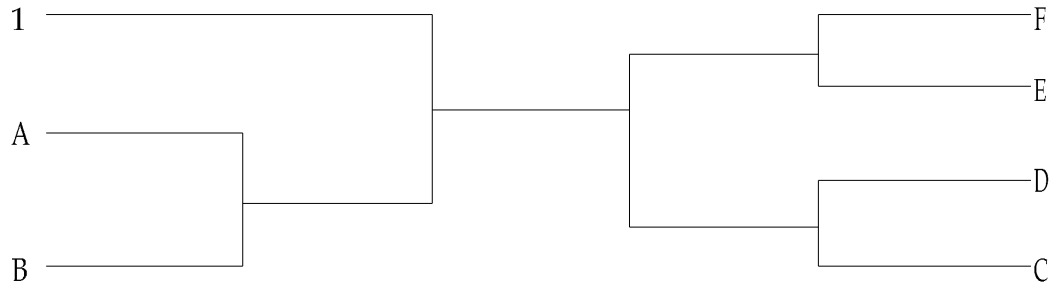
(5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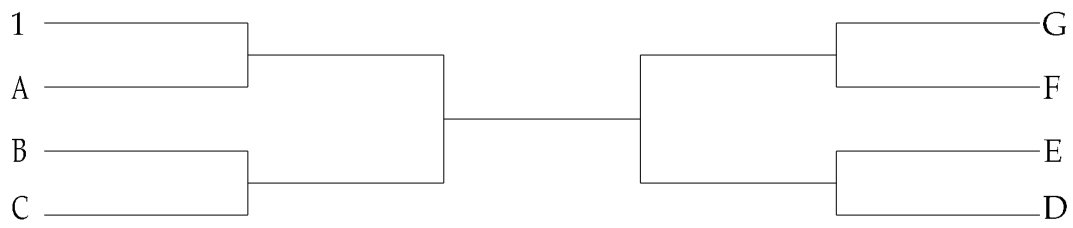
(6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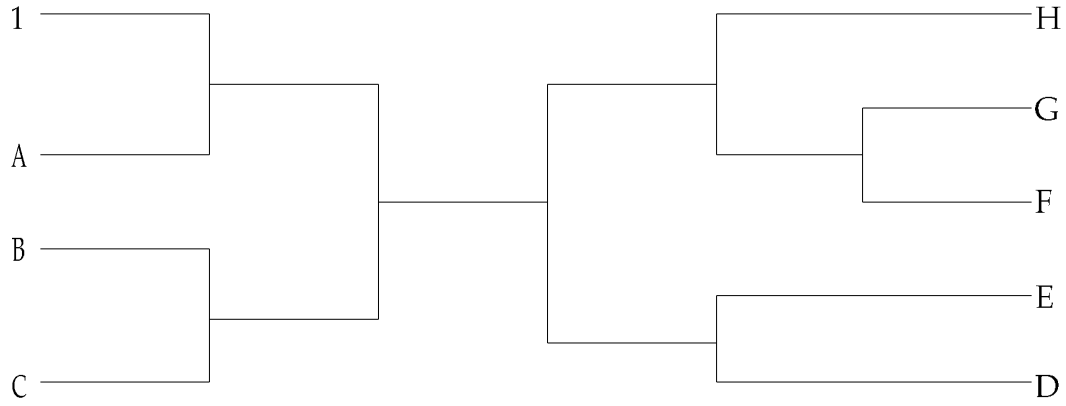
(7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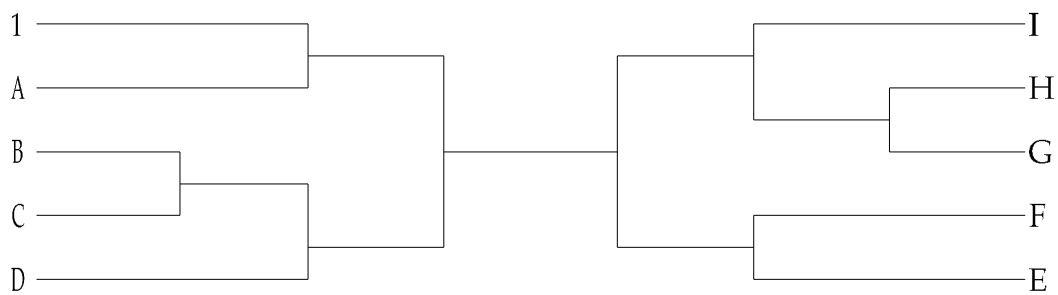
(8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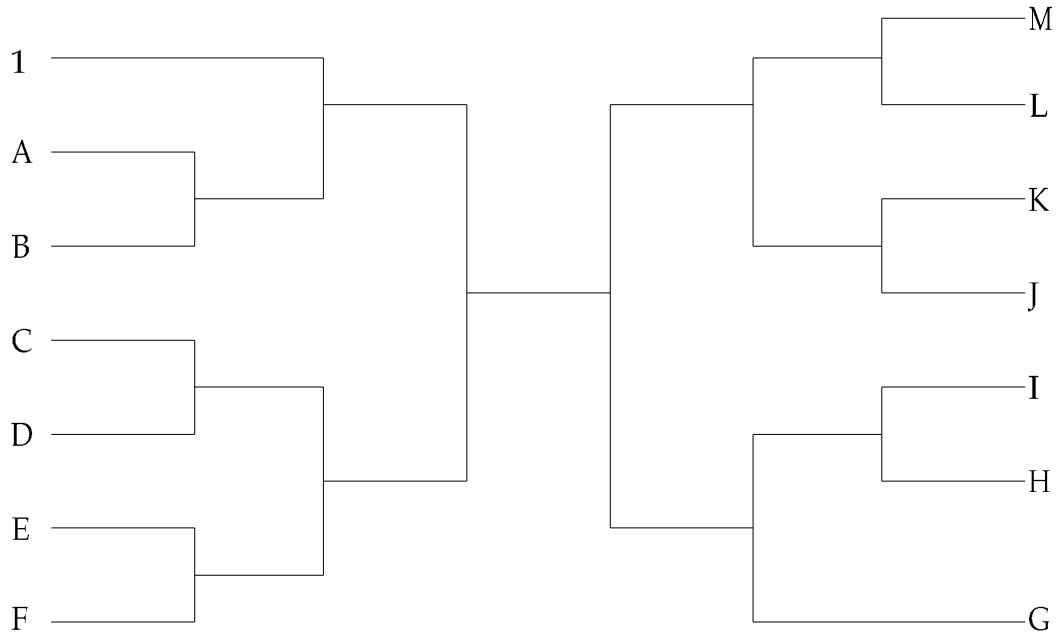
(9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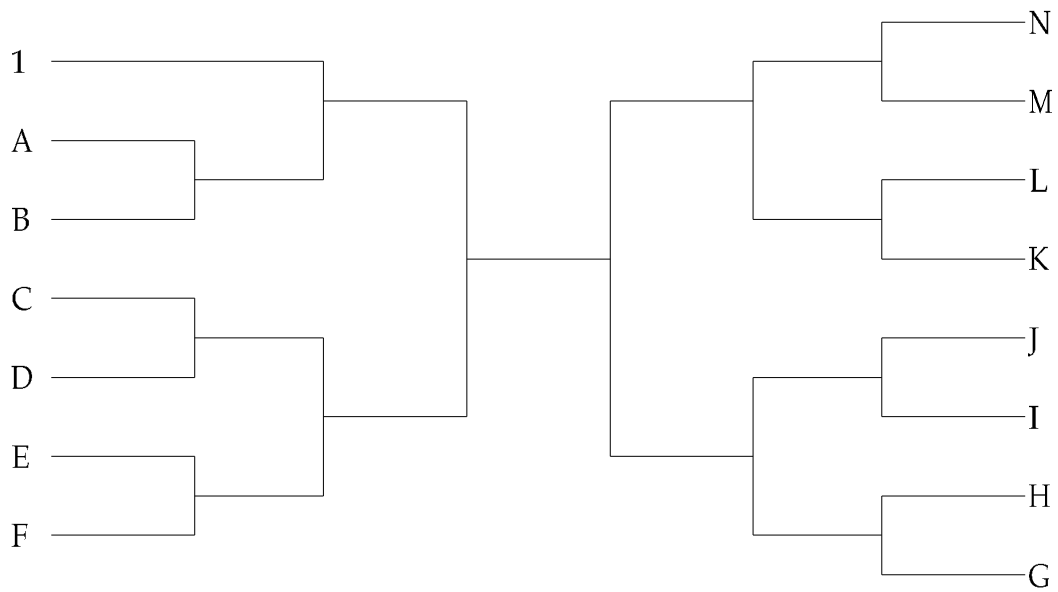
(10개팀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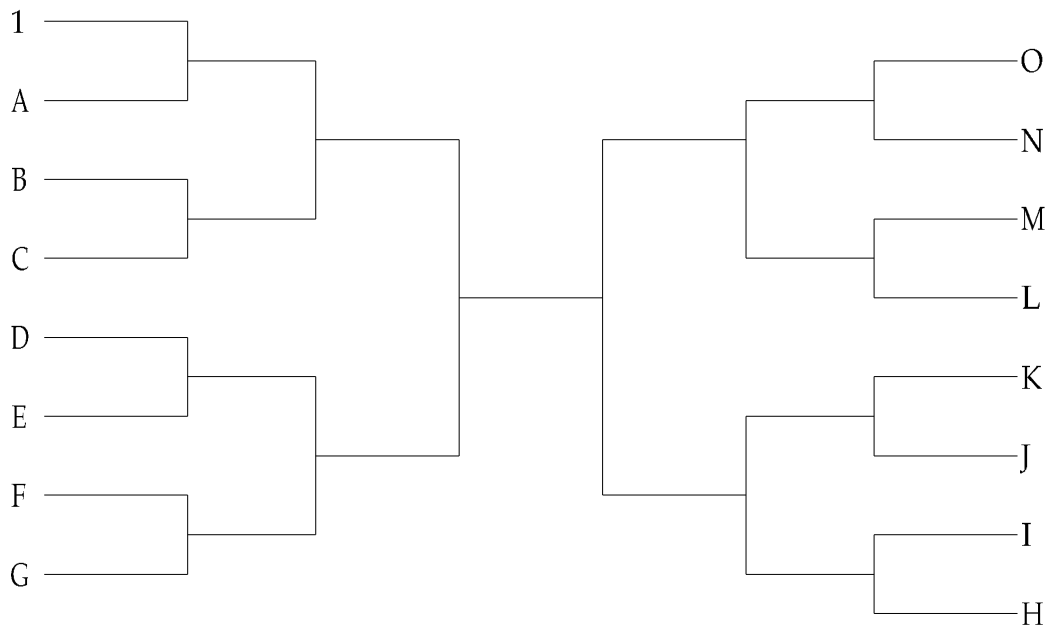
(14개팀 참가)



(15개팀 참가)



(16개팀 참가)



채 점 내 규

채 점 내 규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내규는 경기도체육대회 시·군별 순위결정을 위한 채점 방법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채 점

제2조 (종합순위 결정) 1부·2부별 종합순위는 경기부문별로 획득한 점수의 총계로 한다.

제3조 (경기부문의 종합득점) 경기부문의 종합득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4사 5입 한다.

$$\frac{\text{1부·2부별 득점합계}}{\text{종별·체급별·세부종목별 득점총계}} \times \frac{\text{당해 시·군의 종별 체급별 획득점수}}{\text{당해 시·군의 종합득점}} \times 100 = \text{당해 시·군의 종합득점}$$

- ▶ 설명 : ① 1부, 2부 득점합계는 당해 경기부문에 참가한 시·군의 수에 따라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한 점수의 합계를 말함.
- ② 종별, 체급별, 세부종목별 득점의 총계는 경기부분에서 종별(남일, 여일, 고등부) 또는 체급별(핀급, 플라이급), 세부종목별(100m, 200m 등)로 획득한 점수의 시·군별 총계를 말함.
- ③ 당해 시·군의 종별, 체급별, 세부종목별 획득점수는 경기부문 내에서 당해 시·군이 종별 또는 체급별 세부종목에서 획득한 점수의 합계를 말함.

제4조 (종합득점이 동점일 경우 순위 결정) ① 시·군별 종합 총득점이 동점인 시·군이 있을 때에는 1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을 상위로 하고, 1위 경기부문수가 같을 때에는 2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을, 2위 경기부문수가 같을 때에는 3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을 상위로 정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 순위전을 실시하지 못할 때에는 동위자수에 해당하는 차위 점수를 합산하여 동위자수로 등분, 배점한다.

제5조 (기권·몰수·불출장 채점) 기권·몰수·불출장한 때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0점으로 한다. 다만, 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의 경기몰수는 당해 단체가 하되 채점여부는 당해 경기단체의 사유서를 운영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토너먼트 경기의 채점) 토너먼트 경기의 종별(체급별) 채점은 다음과 같이 한다.

팀수	1 위		2 위		3 위		5 위		9 위		17 위	
	팀수	점수	팀수	점수	팀수	점수	팀수	점수	팀수	점수	팀수	점수
8	1	8	1	7	2	5.5	4	2.5				
9	"	9	"	8	"	6.5	"	3.5	1	1		
10	"	10	"	9	"	7.5	"	4.5	2	1.5		
11	"	11	"	10	"	8.5	"	5.5	3	2		
12	"	12	"	11	"	9.5	"	6.5	4	2.5		
13	"	13	"	12	"	10.5	"	7.5	5	3		
14	"	14	"	13	"	11.5	"	8.5	6	3.5		
15	"	15	"	14	"	12.5	"	9.5	7	4		
16	"	16	"	15	"	13.5	"	10.5	8	4.5		
17	"	17	"	16	"	14.5	"	11.5	"	5.5	1	1
18	"	18	"	17	"	15.5	"	12.5	"	6.5	2	1.5
19	"	19	"	18	"	16.5	"	13.5	"	7.5	3	2

제7조 (육상종목의 채점) 육상종목은 다음과 같이 채점한다.

① 채점방법 : 트랙, 필드, 마라톤 경기에 배점된 점수를 각 1개 경기부문으로 간주하여 분리 채점한다.

1. 트랙·필드 경기의 채점은 종목별 6위까지의 입선자만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선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

등 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배 점	6 점	5 점	4 점	3 점	2 점	1 점

(참가하여도 입선 또는 득점하지 아니한 시·군은 경기부문 참가 시·군의 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하지 않는다)

2. 마라톤 경기의 채점기준

- 제한 시간내에 골인한 선수 전원에 대하여 채점하되, 최하위자를 1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
- 제한 시간내에 골인한 선수가 없는 시·군은 채점대상은 되나 0점이 되며, 최하위 시·군이 됨. 즉, 0점의 시·군이 2개 시·군일 경우 최하위가 2개 시·군이므로 배점 3점부터 1점씩 가산.

제8조 (수영종목 채점) 수영종목의 채점은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선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한다.

제9조 (역도종목 채점) 역도종목은 다음과 같이 채점한다.

① 채점방법 : 체급별 참가자 중 1위를 8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계는 8위까지 채점 하되, 9명이상 출전할 경우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한다. 인상, 용상 경기의 채점은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으로 채점한다. (단, 2명이 참가한 시·군은 인상,용상, 합계에서 전원 채점한다.)

예) 8명 참가

등 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 위	8 위
합계배점	8 점	7 점	6 점	5 점	4 점	3 점	2 점	1 점
인상, 용상배점	3 점	2 점	1 점					

제10조 (궁도종목 채점) 궁도종목의 채점은 단체전 기록이 최하위 시와 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며 개인순위 3위까지 배점한다. (1위 : 3점, 2위 : 2점, 3위 : 1점)

제11조 (볼링종목 채점) 볼링종목의 채점은 최하위 1부와 2부를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 채점한다.

제12조 (골프종목 채점) 골프종목의 채점은 단체전 기록이 최하위 1부와 2부를 1점으로 하며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고, 개인전은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으로 전원 채점한다.

제13조 (보디빌딩종목 채점) 체급별 참가자중 1위를 8점으로 하여 8위까지만 채점하되 1개 시·군 2명 이상이 8위 이내 입상한 경우 전원 채점한다.

제14조 (우슈종목 채점) 투로(장권전능, 남권전능, 태극권전능) 종목의 채점은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되 1개 시·군에 2인 이상이 입상할 때에는 상위자만 채점하며, 차하위 시·군의 선수가 해당 순위를 승계토록 하여 채점 한다.

제15조 (사격종목 채점) 사격종목의 채점은 단체전 기록이 최하위 1부와 2부를 1점으로 하며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고, 개인전은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으로 전원 채점한다.

토너먼트 경기종목 채점조건표

등위 팀수	1위		2위		3위		5위		9위	
	팀수	점수	팀수	점수	팀수	점수	팀수	점수	팀수	점수
2 팀	1	2	1	1						
3 팀	1	3	1	2	1	1				
4 팀	1	4	1	3	2	1.5				
5 팀	1	5	1	4	2	2.5	1	1		
6 팀	1	6	1	5	2	3.5	2	1.5		
7 팀	1	7	1	6	2	4.5	3	2		
8 팀	1	8	1	7	2	5.5	4	2.5		
9 팀	1	9	1	8	2	6.5	4	3.5	1	1
10팀	1	10	1	9	2	7.5	4	4.5	2	1.5
11팀	1	11	1	10	2	8.5	4	5.5	3	2
12팀	1	12	1	11	2	9.5	4	6.5	4	2.5
13팀	1	13	1	12	2	10.5	4	7.5	5	3
14팀	1	14	1	13	2	11.5	4	8.5	6	3.5
15팀	1	15	1	14	2	12.5	4	9.5	7	4
16팀	1	16	1	15	2	13.5	4	10.5	8	4.5

경기종목 및 종별

[● 시범종목]

번호	구분 종목		일반부		고등부		비고
			남	여	남	여	
1	육	상	○	○	○	○	
2	수	영	○	○			
3	축	구	○	○			
4	테	니스	○	○			
5	정	구	○	○			
6	배	구	○	○			
7	탁	구	○	○			
8	복	싱	○				
9	역	도	○				
10	씨	름	○				
11	유	도	○				
12	검	도	○	○			
13	궁	도		○			
14	배	드민턴	○	○			
15	태	권도	○	○			
16	볼	링	○	○			
17	골	프	○				
18	보	디빌딩	○				
19	우	슈	○				
20	사	격		○			
21	요	트	●	●			

경기도체육대회 규정

경기도체육대회 규정

2003년 3월 01일 제정
2004년 3월 10일 개정
2005년 3월 21일 개정
2006년 2월 22일 개정
2006년 8월 22일 개정
2008년 9월 29일 개정
2010년 2월 9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매년 도내에서 개최하는 경기도체육대회(이하 “도민체전”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민체전에 관한 권리) 본회는 도민체전의 조직과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과 중계방송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제3조(대회 회수) 도민체전은 1981년 7월 1일 인천과 분리이후 1982년 제 28회 대회부터 회수를 기산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연도도 회수를 통산한다.

제4조(개최시기 및 기간) ① 도민체전은 매년 5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개최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2010. 2. 9 개정)

② 대회기간은 5일 이내로 하되 종목별 특성에 따라 사전경기를 허용할 수 있다.(2008. 9. 29 개정)

제5조(경기행사 제한) 도민체전 개최일 5일 전부터 완료일까지 도내 종목별 대회는 개최할 수 없다.

제6조(대회상징 마크) ① 도민체전의 상징마크는 경기도의 상징마크를 중앙에 두고 월계수 잎의 원으로 제작한다.

② 대회기 게양용은 가로 540cm, 세로 360cm로 제작하고 개최지 전달용 대회기는 가로 135cm, 세로 90cm로 제작한다.

제7조(대회표어) ① 도민체전 표어는 본회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개최지는 대회표어를 주경기장과 각 종목별 경기장에 게시하여 다중이 볼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체육대회가) 경기도체육대회에 대회기 게양시에는 승리의 노래를, 개회식 및 폐회식 후에는 경기도의 노래를 진행한다.(2006.2.22 개정)

제9조(대회명칭 등에 관한 권리) 대회명칭, 대회상징마크, 대회표어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본회의 독점적 권리이며, 타인이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대회 엠블렘·대회 마스코트 및 대회구호) 조직위원회는 대회 홍보 및 대회 특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본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대회 엠블렘·대회 마스코트 및 대회구호를 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2 장 경기도체육대회 운영위원회

제11조(설 치) 본회 규약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체육대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06.2.22 개정)

제12조(사 업)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2006.2.22 개정)

1. 도민체전 유치에 관한 사항

2. 도민체전 경기종목의 채택 및 제외에 관한 사항
3. 도민체전의 참가요강 변경에 관한 사항
4. 도민체전 시상에 관한 사항
5. 도민체전 심판 및 소청에 관한 사항

단, 도민체전 기간 내 처리되어야 할 이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6. 기타 도민체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13조(조직)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2008. 9. 29 개정)

제14조(운영)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4.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소집위원회를 개최하기에는 안건의 시급성과 관련, 무리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2010. 2. 9 개정)

제1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본회 규약 제11조①항의 규정에 따른다.

(2006.2.22 개정)

제 3 장 개최지 선정

제16조(유치신청) 도민체전 개최를 희망하는 시·군지부는 대회개최 3년 전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회에 신청하여야 하고 개최 희망 시·군이 없을 경우 수원·성남·부천·의정부·안양시 순으로 윤번제로 개최한다.(2004.3.10 개정)

1. 각 경기장의 시설현황 및 관람자 수용계획
2. 선수단의 숙박계획
3. 기타 대회유치와 관련된 사항

제17조(개최지 결정) 개최지 결정은 제16조에 의거, 유치신청된 시·군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2006.2.22 개정)

제 4 장 대회조직위원회

제18조(설 치)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개최지에 경기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구성시기) 조직위원회는 경기도체육대회 개최 1년 이전에 구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임 원) 조직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 원 장 1 인

- 2. 부위원장 약간인
- 3. 위 원 약간인
- 4. 간 사 약간인

제21조(임원의 선출방법) 위원장은 개최지의 자치단체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개최지 체육회 임원 1인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 5 장 대 회 참 가

제22조(예선대회) 본회 각 지부는 도민체전 참가 시·군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하여 예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참가신청) ① 시·군별 예선대회에서 대표로 선발된 개인 및 단체는 대회 참가요강에 의거 소정 기일 내에 해당지부장이 본회 소정양식의 참가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지약물 복용으로 국·내외 대회출전 금지 중인 선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2005.3.21 신설)

제24조(참가요강) ① 도민체전의 일반사항·참가자격·경기종목별 참가는 본회가 별도로 정한 참가요강에 의한다.

② 도민체전 참가요강의 변경사항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2006.2.22 개정)

제25조(경기방법) 도민체전 경기는 시·군 대항으로 하되 인구기준 1·2부 시·군으로 양분하여 경기를 실시하며, 개최지가 속한 부는 15개 시·군, 개최지가 속하지 않은 부는 16개 시·군으로 구분하여 경기한다.(2006.2.22 개정)

제 6 장 경 기 종 목

제26조(경기종목) 도민체전의 경기종목(정식종목)은 다음의 1호와 같으며, “정식종목”이라 함은 종합채점에 포함되는 경기종목을 말한다.(2006.2.22 개정)

1. 경기도체육대회 경기종목(20)

육상, 수영, 축구, 테니스, 정구, 배구, 탁구, 복싱, 역도, 씨름, 유도, 검도, 궁도, 태권도, 배드민턴, 볼링, 골프, 보디빌딩, 우슈, 사격

(2008. 9. 29 개정)

2. 세부종별은 별표 1과 같다.

제27조(시범경기 종목의 운영) ① 본회가 특별히 보급·발전·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종목에 대하여 시범종목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범종목은 채점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종목은 3년간의 종목활성화 및 시·군 참여도를 판단하여 정식종목 채택 여부를 도민체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2006.8.22 개정)

제28조(부별 및 종별) 각 경기종목의 부별 및 종별은 제24조의 참가요강에 의한다.

제29조(세부종목) 각 경기종목의 실시 세부종목은 제24조의 참가요강에 의한다.

제30조(경기종목 등의 채택 및 취소) 경기종목·부별·종별·세부종목의 채택 및 취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2006.2.22 개정)

제 7 장 경기운영 및 경기장

제31조(경기운영) ① 도민체전의 모든 경기는 본회의 경기운영 내규에 따라 운영한다.(2006.2.22 개정)

② 종목별 경기단체에서는 우천시를 대비하여 차선책 등 경기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2005.3.21 신설)

제32조(단체구성) 개인경기 단체전 및 단체경기종목의 단체구성은 제 24조의 참가요강에 의한다.

제33조(경기운영방법) (삭제)(2006.2.22 개정)

제34조(일정 및 대진추점) ① 종목별 경기일정은 각 가맹경기단체와 협의하여 본회가 결정한다.

② 대진은 각 시·군지부 대표자 입회하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35조(경기심판) ① 경기판정에 있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경기를 담당한 주심이 이를 처리한다.(2006.8.22 개정)

② 주심의 판결에 대한 이의는 당해 경기종목의 심판부장이 이를 처리한다. (2006.8.22 개정)

③ 해당 경기종목 심판부장의 규칙적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는 해당 경기종목 임원장이 이를 처리한다.(2006.8.22 개정)

제36조(무자격 선수 출장) ① 단체경기 또는 개인경기 단체전 종목에 있어서 대회 개막 이후 무자격 선수가 출장하였을 때에는 해당 소속팀은 실격으로 한다.(2008. 9. 29 개정)

② 참가신청하여 경기에 실제로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③ 무자격 선수 출장이 확인되어 몰수되었을 경우, 선수소속 시·군은 당해 종목에 대하여 차기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당해 종목이라 함은 단체경기·개인경기 단체전 종목은 해당 종별을, 개인경기 종목은 해당 세부종목 및 체급을 말한다.

제37조(지위 변동) 무자격 선수가 출장하였을 때에는 무자격 선수와 그 소속팀은 즉시 실격으로 하고 당해 선수와 그 소속팀이 획득한 모든 지위는 무효로 하되 실격 선수와 그 소속팀에 패한 상대방의 지위는 회복되지 아니한다. (2008. 9. 29 개정)

제38조(경기장 배정 및 사용승인) ① 조직위원회는 도민체전 경기종목 경기장을 배정함에 있어 개최 시·군 내 경기장을 최대한 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 개최 시·군 이외 타 시·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대회 개최 2개월 전까지 해당 시·군 체육시설관리 주체와 협의한 후 시설이 용에 관한 사항을 본회로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배정(안)과 함께 경기장의 조명, 안전망, 차광막, 관중수용 능력, 바닥재의 상태, 득점판 등의 경기진행 시설 및 경기진행에 필요한 각종 통신시설, 비품 등을 명시한 각 경기장별 도면을 당해년도 3월말까지 본회로 제출하여야 하며 가맹경기단체의 승인과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인을 필요로 하는 경기장은 중앙경기단체의 공인을 필하여야 한다.

제39조(경기장 규격) 조직위원회는 해당 경기종목의 중앙경기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한 정규 규격을 갖춘 경기장을 준비하여야 하며 관람객의 수용인원을 사전에 검토하여 적정하게 배정하여 경기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0조(시설 및 경기용품 등) 조직위원회는 중앙경기단체 관계규정에

의한 경기시설 및 경기용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경기장 출입 신분증)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임원·선수를 구분한 신분증(I.D CARD)을 발급할 수 있다.

제 8 장 채점 및 시상

제42조(순위결정) 도민체전의 시·군별 순위는 본회의 대회채점내규에 의거 채점하여 종합순위를 결정한다.

제43조(채 점) 도민체전의 채점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44조(시상구분) 도민체전의 시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상한다.

1. 종합 시상
2. 종목별 시상
3. 단체 및 개인 시상
4. 성취상
5. 모범선수단상
6. 입장상
7. 경기단체질서상
8. 기타 필요한 시상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5조(시상방법) 도민체전의 시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합 시상 : 종합우승 시·군에는 1·2부 각 본회 회장의 우승배와 본회 우승기를 수여
2. 종목별 시상 : 종목별 1·2·3위에 본회 회장 우승배와 상장

3. 단체 및 개인 시상 : 단체 및 개인 1·2·3위에 본회 회장 상장 및 메달
4. 성취상 : 전년도와 대비 월등히 향상된 순위에 따라 1·2부 각각 본회 회장 성취배
5. 모범선수단상 : 경기 질서를 가장 잘 지킨 1·2부 선수단 1·2·3위에 본회 회장 모범선수단상배
6. 입장상 : 개회식 입장 질서를 가장 잘 지킨 1·2부 선수단 1·2·3위에 본회 회장 입장상배
7. 경기단체질서상 : 경기장 질서를 가장 잘 지킨 경기단체에 본회 회장 질서상배
8. 기타 시상

제 9 장 대 회 임 원

제46조(임원 구분) 도민체전의 임원은 대회임원, 경기단체임원, 개최지역 운영위원 및 경기장 운영위원으로 구분한다.

제47조(대회임원) ① 대회임원은 본회 회장이 위촉하며 대회기간 중 활동한다.

② 대회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회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2. 부대회장은 본회 부회장과 개최지 자치단체장으로 한다.
3. 고문은 본회 고문으로 한다.
4. 참여는 원로 체육자문위원 및 참가 시·군 자치단체장, 본회 가맹 경기단체장, 각급 기관장으로 한다.

5. 임원장은 본회 사무처장으로 한다.
6. 본부 임원은 본회 이사, 감사, 개최지 대회조직위원회 임원으로 한다.
7. 종목별 임원장은 개최종목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로 한다.
8. 소청심의 위원은 본회 도민체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2008. 9. 29 개정)
9. 총무부·경기부·심판부·기록부·식전부·보도부·경비부 및 의무부 등의 임원은 각기 맡은 부서에 따라 구성한다.

제 10 장 개·폐회식

제48조(초 청) 개최식 초청은 본회 회장명의로 하며 초청인은 개최지와 별도 협의한다.

제49조(개·폐회식) ① 개최식은 개최지의 실정에 맞게 정하고 본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2008. 9. 29 개정)

② 폐회식은 도민체전 최종일 경기완료 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6.2.22 개정)

제50조(개회식 구성 및 운영) ① 개최식은 식전공개행사·공식행사 및 식후공개행사로 구성한다.

② 개최식의 식전 및 식후공개행사는 조직위원회가 개최지의 실정에 맞게 식전 30분, 식후 20분내로 구성한다.(2006.2.22 개정)

③ 개최식과 관련된 모든 행사는 본회가 이를 진행한다.

제51조(개·폐회식 운영계획) 조직위원회는 개·폐회식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도민체전 개최 2개월 전까지 세부행사계획은 1개월 전까지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06.2.22 개정)

제52조(개·폐회식 공식행사의 식순) 개·폐회식 공식행사의 식순은 다음과 같다.

《개회식순》	《폐회식순》
- 개식 통고 (1분)	- 개식 통고 (1분)
- 시·군선수단 입장 (45분)	- 성적 발표 (3분)
- 국기에 대한 경례 (1분)	- 시 상 (20분)
- 애국가 제창 (2분)	- 폐 회 사 (4분)
- 개회 선언 (1분)	- 국기 강하 (3분)
- 대회기 게양 (2분)	- 대회기 강하 (2분)
- 성화 점화 (5분)	- 대회기 전달 (2분)
- 환 영 사 (5분)	- 환 송 사 (3분)
- 대 회 사 (5분)	- 폐회 선언 (1분)
- 축 사 1 (5분)	
- 축 사 2 (5분)	
- 선수대표 선서 (3분)	
- 입장상 시상 (6분)	
- 경기도의 노래 합창 (3분)	
- 선수단 퇴장 (6분)	

제53조(개·폐회식 사용 음악) ① 조직위원회는 개·폐회식 공식행사시에 필요한 공식음악을 직접 연주 또는 녹음 음악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애국가, 국기에 대한 경례곡은 관계법규에 따른다.

③ 선수단 입장시 연주되는 음악은 행진하는 선수단이 절도 있고 질서 있는 행진대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에 맞는 음악을 사용한다.

제54조(입장대형) ① 개회식시 행진은 도민체전표지판, 태극기, 경기도

체육회기, 총지휘자, 도민체전대회기, 가맹경기단체기수단, 시·군표지판, 시·군체육회기, 시·군총지휘자, 임원단위대, 여자단위대, 남자단위대 순으로 입장하되 필요에 따라 선도악대가 행진대형을 유도 입장할 수 있다.

② 각종 표지판은 조직위원회가 제공하여야 하며 관중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식과 규격을 갖춰야 한다.

제55조(선수단 입장) ① 각 시·군 선수단의 입장대형은 시·군표지판, 기수, 지휘자, 선수단 60명의 순서로 구성된다.

② 시·군 표지판 요원과 기수는 조직위원회가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선수단 입장선수는 차기 개최지가 첫번째로 입장하며 이후 1·2부 구분하여 시·군 코드번호 순으로 입장하고 개최지 선수단은 맨 마지막에 입장한다.

제56조(국민의례) ① 국민의례는 관계법규에 의한다.

② 태극기 게양대는 주경기장 본부석 정면에 건물 최상단에서 5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57조(개회선언) ① 도민체전 개회선언은 부대회장이 한다.

② “제○○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가 끝남과 동시에 팡파르 음악을 연주하여야 한다.

제58조(환영사) 환영사는 개최지 자치단체장이 한다.

제59조(대회기 게양) ① 대회기는 개회식 때 “승리의 노래”를 합창하는 가운데 주경기장에 게양하여 대회기간 중 계속 게양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주경기장 내 15m 이상의 대회기 게양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0조(성 화) 시설과 여건이 맞으면 성화를 운영할 수 있다.

제61조(대회사) 대회사는 대회장이 한다.

제62조(선수대표 선서) ① 선수대표는 전 선수단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대회장에 대하여 선서한다.

② 선수대표가 선서할 때는 시·군기수단은 선서대를 반원으로 에워싸고 도열한다.

선 서

제○○회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일동은 대회규정을 준수하여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선수대표 ○ ○ ○

제63조(행사요원의 선정) ① 공식행사의 요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며, 조직위원회는 대회개최 20일 전까지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2006.2.22 개정)

1. 총지휘자 1인

2. 참가선수 대표 2인 이내

3. 성화 최종주자 2인 이내

② 성화운영시 성화최종주자는 선수 또는 선수출신인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64조(폐회식 운영) ① 폐회식은 본 규정 제49조 제2항에 의한다.

② 성적발표는 대회임원장이 한다.

③ 축가는 조직위원회가 정하되 개최지의 상징적인 곡 또는 시상을 축하하는 곡으로 2분 내외로 연주 또는 합창한다.

④ 폐회선언은 부대회장이 “제○○회 경기도체육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로 한다.

제65조(광고 등의 설치) 도민체전 개·폐회식 주경기장 또는 모든 경기장 내에 설치되는 광고에 대한 권리는 본회의 독점적 권리이다.

제 11 장 소청 및 처리

제66조(소청처리) 도민체전 대회기간 중 동 대회에 참가한 각 시·군의 임원·선수 및 응원단의 심판판정을 제외한 기타 판결되지 않은 부정 불미한 사실에 대해 소청 및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는 도민체전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2006.8.22 개정)

부 칙 (2000. 3. 1 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10 개정)

1.(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3. 21 개정)

1.(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22 개정)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 22 개정)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29 개정)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9 개정)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